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연구성과 등을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 〉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37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연구성과 등을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지영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9. 17.

다. 회 부 일 : 2025. 9.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에 과도하게 인용하여 연구의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이른바 '논문 쪼개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연구평가 체계를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함으로써 건전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연구성과 등을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개발자료나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일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u><신설></u>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u>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는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함.

이 중 표절이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함.¹⁾

최근 10년간 위조·변조·표절 및 저자 부당 표시 부정행위 발생 건수는 다음과 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나 성과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건수가 2024년 기준 7건, 최근 5년('20~'24년) 기준으로는 17건 발생함.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 5. (생략)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최근 10년간('15 ~ '24년) 부정행위 현황 >

(단위: 건)

연도	위조	변조	표절	저자 부당 표시	합계
2015	2	3	4	-	9
2016	-	-	7	-	7
2017	-	-	10	1	11
2018	3	4	8	3	18
2019	-	20	7	2	29
2020	1	7	9	6	23
2021	1	-	6	16	23
2022	13	2	6	21	42
2023	4	4	5	3	16
2024	7	6	17	4	34

주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부과된 제재처분연도에 따라 집계한 것임

주2: 위조·변조(8건), 위조·표절(1건), 변조·표절(11건), 표절·저자부당표시(9건)은 각 해당 사유에 중복집계한 것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일반적으로 자신의 연구내용·결과 등을 새로운 논문이나 서적 등에 재사용하는 행위는 중복게재(또는 이중게재, duplicate publication)의 일종으로, 타인의 아이디어나 글을 표절하는 행위와는 구별됨.

다만,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중복게재를 통한 논문 쪼개기가 성행할 경우 새로운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의 연구결과가 반복적으로 심사됨으로써 연구평가 체계에 낭비와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활동 수행 중 자신의 연구개발자료/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려는 것임.

특히,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지원, 사전기획 등 활동 중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연구성과 등을 인용하여 연구성과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인 학술 연구와는 다르게 취급하여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등 제재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부정행위로 규정하고자 하는 행위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신의 연구자료나 성과를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는 유사 법령 및 지침을 살펴보면 개정안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3호는 부정행위의 일종인 ‘표절’에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성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개발성과 등을 재사용하면 표절에 해당하나, 출처를 명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절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출처를 명시했더라도 인용 정도가 과도한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이나 연구권익보호위원회 등에서 표절로 간주될 수 있음.

②「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²⁾

2)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표절 외의 행위로서 연구자와 대학등에 금지되는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해당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취지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³⁾이 발의되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

현행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 개정안」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u><신 설></u>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u>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u> 3. (현행 제2호와 같음)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3) 의안번호 제2213038호,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2025.9.17.)

즉, 「학술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개정안은 자신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만을 연구부정행위로서 간주하고 금지하는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출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자료’ 또한 인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범위가 넓음.

③교육부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⁴⁾에서는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음.

④한편, 현행법 개정안은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인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가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⁵⁾

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5)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서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 규정)

제8조(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① (생략)

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다만,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은 연구데이터에 대하여는 정확한 출처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구성과가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출처 표시나 인용 의무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자신의 연구성과 등을 인용하는 부정행위 관련 정의 비교 >

법령·지침	관련 정의	출처 표시한 경우 부정행위 해당 여부
개정안	-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인용하는 행위	△ 해당할 수 있음
현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의 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X
학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	X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X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서울대학교지침)	- 연구문헌 작성 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면서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는 경우	△ 해당할 수 있음
	- 연구데이터를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경우	X

②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데이터는 정확한 출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성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 인용 금지 대상에 연구데이터 등 연구개발자료를 포함할지 여부 등 부정행위로 규정하려는 자신의 연구성과 등을 인용하는 행위의 범위와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둘째, 자신의 연구개발성과 등을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에 앞서 학계의 관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①학생이 과거에 작성한 학위논문을 학계의 학자들이 검토하여 정제 및 보강을 거쳐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나, ②이전에 학술지논문으로 발표한 본인의 연구내용을 추후 학위 논문에 재사용하는 것이 이공계 분야에서 장려되어야 하는 행위이자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점⁶⁾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에서도 과학기술분야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되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으로서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행위인지에 더불어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6) 한국연구재단. (2014).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36-37

7)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연구윤리 규정」(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및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부정행위를 검증하고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연구부정 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인지 여부
2.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

동일한 데이터나 결과를 재해석·확장하는 후속연구가 특히 활발한 이공계 분야에서는 과도한 제재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학문적 창의성과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연구개발성과 등을 인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학계 및 연구현장으로부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임.

셋째, 자신의 연구성과 등을 인용하는 행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미국·EU·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연구성과 등을 인용하는 행위를 법률로 제재하기보다는 주로 학회나 기관 차원의 자율규제나 출판윤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자기 인용이나 문장 재사용(text recycling)이 허용되는 측면도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연구성과 등을 인용하는 행위를 법적 제재 대상으로 법률에 명문화할 경우 국내 연구자가 국제공동연구에서 규제 불균형으로 인해 연구 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연구계의 갈라파고스 현상이 초래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행위자의 고의, 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

< 자신의 연구성과 등을 인용하는 부정행위 관련 해외 주요국 규정 >

구분	주요 정책
미국	미국 연방 규정인 「42 CFR Part 93」은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를 위조, 변조, 표절을 포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기표절(self-plagiarism)은 제외하고 있음.
일본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제정한 「연구부정행위 대응 지침(Guidelines for Responding to Misconduct in Research)」에서는 연구기관의 책임 강화, 부정행위의 명확한 정의 및 조사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부정행위에 표절(plagiarism)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기표절을 별도의 법 조항으로 규정하지는 않음.
EU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Research Integrity」에서는 자신의 이전 출판물을 적절히 인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다시 출판하는 행위를 자기표절(self-plagiarism)로서 연구부정행위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COPE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PE) ⁸⁾ 는 자신의 이전 논문에서 상당한 부분을 다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편집자의 대응 지침(Text recycling guidelines for editors)을 제공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227

8) 국제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는 전 세계 학술 출판계가 자율적으로 만든 윤리규범·가이드라인 제정 및 중재기구로, 기구의 회원으로 가입한 14,000여 개의 저널에 대하여 윤리코드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불이행 시 자격정지·제명하는 등 사실상의 국제표준 연구윤리 제정 기구로 기능하고 있음.